

배곧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2015.11.16.
1차 개정: 2016.4.4.
2차 개정: 2018.4.13.
3차 개정: 2021.10.19.
4차 개정: 2022.7.15.
5차 개정: 2023.1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배곧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배곧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정의】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6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7조 【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10조 제7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제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단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읽기 및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욕설 폭행 등 위협적 행위)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단위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읽기 및 요약 등 과제 부여
제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읽기 및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교장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제10조 제12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12항의 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학교 시까지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학교 시 가져가도록 안내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학급담당교원(담당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2조 【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사항】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6조 【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17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9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0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학교 교사, 보호자,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함, 각종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상담전화 등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해당)학생의 보호자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8.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2490-217)	9. 생명의 전화 1588-9191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10. 청소년자살예방상담 1599-30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11. 자살예방핫라인 1577-0199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고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22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할 수 있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3조 【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실내화는 흰색 계열 실내화로 하고,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4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 및 담당교사 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5조 【소지품】

1.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
2.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ライター 등),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할 수 없다.
3. 학생들의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6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7조 【개인정보 열람】 학생이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혐오표현을 금지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9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본교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육교, 지하도통행과 철길로 다니지 않기 등),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30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31조 【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32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는 학교 등교 시 교문입구에서 전원을 끄고, 하교 시 교문 밖에서 전원을 켜도록 하며,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교내에서 교육목적 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대전화기는 수업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3조 【교육 정보실 생활 규칙】 교육정보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 정보 자료실 에 입실할 때에는 필기도구 및 컴퓨터 관련 책자와 일체 다른 물건(책가방이나 신발주머니)을 소지할 수 없다.
2. 음식물을 가지고 입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사용한 프로그램은 제자리에 반드시 둔다.
4. 정보 자료실에 있는 비품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5. 컴퓨터를 다 사용한 후엔 반드시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퇴실한다.
6. 교육정보실에서는 절대 게임을 하지 않는다(게임하다 적발 시 출입을 금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34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단, 전교자치임원선거는 4-6학년이 실시하도록 한다.)

제35조 【권리 및 의무】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본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6.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설치·운영한다.

제36조 【의사결정】

1. 학생자치활동의 의사결정은 학생회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되면 정당한 효력이 발생한다.
2. 지도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7조 【관장사항】 본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존중한다.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각종 캠페인 지원(금연,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6. 그 외 학생생활 관련 활동

제38조 【학급회 임원과 선출】 학급 학생자치회임원과 선출은 학급학생자치회 운영계획 및 선출계획에 따른다.

1. 2~3학년
 - 1) 학급에서는 학급학생자치회임원을 3명 선출한다.
 - 2) 서기 1인과 각부의 구성과 부장은 학급 내에서 결정한다.
 - 3) 학급자치회임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 4) 임원조직은 연간 운영 순서를 3월 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미리 정하고 1개월의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 순서에 해당되는 학생이 학급자치회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 5) 학급자치회임원 조직은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임교사가 민주적으로 방법과 절차를 따라 조직한다.
2. 4~6학년
 - 1) 선출 임원: 회장(남녀 구별 없이),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씩)
 - 2) 선출 과정은 배곧초등학교 학급학생자치회 임원 선출계획(4~6학년)을 따른다.
 - 3) 학급 회장은 학급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교학생자치회에 참석한다. 회장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회장 2인중 1인이 참석한다.
3. 1학년은 학생자치회를 운영하지 않는다.

제39조 【부서】 학급과 전교학생자치회는 공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아래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구분	활동 내용	시기
내용	생활안전부 •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실시 • 예시: 학교 폭력 예방, 안전 예방, 안전점검, 환경 보호, 나라사랑, 바르고 고운 말 사용 등	연중
	환경봉사부 • 학교 안팎 실내환경과 자연환경 지킴 봉사 활동,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만들기 활동, 환경 캠페인 활동	연중
	신문·방송부 • 학교 안팎 소식 전달, 신문제작, 카메라, 비디오 촬영, 음악방송 운영 및 사회자, 오디오 제작	연중
	체육부 • 체육 행사, 체육대회, 런앰워크 참여 및 홍보 활동	연중
	도서부 • 도서 행사 진행, 및 홍보, 도서일지 작성, 추천목록작성, 도서관 홍보 활동	연중
	학예부 • 학교 축제 참여 및 홍보활동, 문화 예술, 취미, 오락 활동 참여	연중

제40조 【직무 및 선출】 학급학생자치회 및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41조 【전교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1. 구성과 선출
 - 1) 회장 1명, 부회장 2명(5, 6학년 각 1명)을 선출하고 선출한 회장·부회장과 부서별 부장 1인, 4~6학년 각 학급자치회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 3) 선출은 4~6학년 전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법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4) 학생자치회를 담당하는 교사는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선출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5~6학년 학생 5명 내외)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 계획과 과정을 관리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이 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곧 공개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하고 해체한다.
2. 기능
 -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2)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1) 전교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월1회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 또는 집행위원 1/20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전교학생자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기타 운영 사항은 본교 계획에 의거한다.

제42조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 전교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의 학기별로 실시하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자치적인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4 장 장애학생 인권 보호

제 1절 총 칙

제43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44조 【책무】

1.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절 장애학생의 인권

제4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46조 【차별 판단】

1.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2.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7조 【교육에 관한 권리】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4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절 인권교육

제50조 【인권 관련 연수 및 홍보】

1.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6.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1조 【근거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학생에 대하여 훈육, 학교 내 봉사, 학부모 면담 등의 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인정하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게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배곧초등학교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구성

- (1) 5인에서 10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
- (3)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담당 부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
- (4) 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

- 2) 역할: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3) 유의사항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 (3)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4)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개최사유 등을 적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5) 학생을 선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6) 위원회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 (7) 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8)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저촉 사유로 인해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학생의 선도

제52조 【선도의 종류】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도를 할 수 있다(병과 조치 불가).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3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정지
2. 학교 내의 봉사
 -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3. 사회봉사
 -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시간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4.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 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4)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선도 기준】 선도 대상의 예시 및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 기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2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3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9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0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1	휴기를 휴대한 학생	○	○	○	○
12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3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4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15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16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
17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8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19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0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1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22	방화	○	○	○	○

제55조 【선도 절차】 선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안 발생	1.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 2. 현장 인지 교사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2)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 인계
-------	---

관찰 면담	1.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대상 학생에 대한 관찰 및 면담 2.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1. 조사 방법 1) 대상 학생 및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 실시 2)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 작성 요청 및 검토 2.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1) 대상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내용·절차·권리 고지 2) 강압 및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3) 2인 이상의 교사가 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장 4)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 실시 5) 원칙: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 실시 6) 예외: 수업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와 수업 시간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수업 시간 조사 실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 및 보충수업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 중 조사 실시 가능 7)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 관련 정보 누설 금지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위원회 준비	1.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위원장에 대한 서면 보고 1) 사안 발생 개요, 위반 조항 및 정도 2)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3) 그 밖의 학생 관련 참고 사항 2. 위원장의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 3.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서면 통지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제56조 【교외 부당행위 처리】 선도 받을 만한 행위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 상호평가가 방법으로 담임교사에 신고할 수 있게 하며 신고한 학생의 신분은 절대 보장한다.

제57조 【사후지도】 학생선도 후 학생의 감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58조 【심의 절차】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4.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의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59조 【선도 내용의 통보】

1.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한다.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소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 【이의제기】

1.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2. 학교 내 재심의 신청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3. 재심의 절차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4.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며,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62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8 장 제정 ·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63조 【위원회 운영】

1.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배곧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그 운영규정에 따른다.

1) 방법 및 내용

- (1)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전문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는 변호사, 교육 및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구성			임기**
		구분	구성 방법	세부방법	
위원장 포함 8명~12명	위원 중 호선	교원	선출	-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학생	선출	- 특정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 위원회의 1/3이상 되도록 구성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불가피한 경우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	
		학부모	위촉 또는 선출*	- (위촉)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 (선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	
		전문가	위촉	- 교원, 학생, 학부모 위원들이 추천하여 위촉 -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외부위원으로 인정	

* 위촉 또는 선출의 방식 중 각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 위원의 졸업,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선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유의사항: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학생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운영한다.

4) 배곧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연번	직위	비고
1	교원	
2	교원	
3	교원	
4	학부모	
5	학부모	
6	전문가	학교전담경찰관
7	학생	학생회 대표
8	학생	학생회 대표
9	학생	학생회 대표

제64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기타-상부기관의 관련 규정·개정을 요구할 시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한다.

2. 의견수렴 과정

- 1) 학생: 학급·학년회의·전교학생자치회 안건으로 상정, 설문조사 등
- 2) 학부모: 학부모회의 안건으로 상정,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
- 3) 교직원: 부서·학년교사회의, 교직원회의 등

제66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7조 【공포 및 홍보】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홈페이지 탑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6년 4월 4일 1차 개정하여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8년 4월 13일 2차 개정하여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1년 10월 19일 3차 개정하여 적용한다.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명칭 변경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신설 내용(제15조 개인정보 열람, 제1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3조 선도 절차) 및 삭제 조항(제47조 시행일, 제58조 목적, 제59조 적용범위, 제60조 용어의 수정) 등을 조와 항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2년 7월 15일 4차 개정하여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3년 11월 1일 5차 개정하여 적용한다.